

##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32호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20일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유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지원금의 지원대상지역을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하였던 부분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 산업고도화에 따른 투자지원 분야를 확대 적용하여 대규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함(안 제6조)
- 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임차료의 지원대상과 지급액 및 한도액을 규정함(안 제10조)
- 시설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 및 한도액을 규정함(안 제11조)
- 보조금 신청 기준 및 기간을 규정함(안 제12조)
- 유치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기업불편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원의 범위 및 지급 금액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 신·중설기업의 지원보조금 규정함(안 제15조)
-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 규정함(안 제16조)
- 보조금의 지원 취소 및 반환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 협력관의 위촉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협력관의 임무 및 회의 소집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협력관의 수당과 성과보상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의 위촉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민간기업 및 투자유치기관의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투자유치에 포상기준을 규정함(안 제23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8.30(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출자                           | 해당조항 | 찬반여부<br>및 사유 | 비고 |
|-------------------------------|------|--------------|----|
| ○ 주 소 :<br>○ 성 명 :<br>○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의 본사이전”이란 기업의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된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함을 말한다.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 본사를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도 이전으로 본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8. “첨단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을 말한다.
9.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0.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물류터미널운영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의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항공법」 제2조제31호의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 건물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새로운 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2.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3.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기업유치위원회 등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업의 본사이전 및 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시 소속 실·국장이상 공무원 4명

3. 기업의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관련분야 인사

4.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관련 실·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6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장려금 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5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함께 고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환경안정자금으로 예산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용장려금은 유치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3년간 상시고용인원을 50명 이상 채용하였던 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장려금은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2년 이내 신규로 고용한 인력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까지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신규로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채용과 2주일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임차료 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이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차료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이전하기 위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1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의 지원신청은 법인이전등기일, 사업등록일,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① 시장은 유치기업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인·허가, 원자재조달 및 인력알선 등 유치기업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금)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기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업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의 기업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② 제1항제1호의 대상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과 기업본사에 한한다.

③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년 지방소득세(소득분 한함)납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2년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신·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① 시장은 기업이 시 관할지역에서 신·증설투자 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 관할지역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것
2.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신·증설 투자할 것
3.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일 것

② 신·증설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이전기업이나 신규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기업 경영활동이 안정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 및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등록일 또는 공장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분양·매입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가동하지 않은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를 3년 이내에 해고한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대상근로자의 인원수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장 기업유치 협력관

제18조(기업유치 협력관의 활용)① 시장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

여 투자유치 전문가를 시 기업유치 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은 기업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국내·국외 투자관련 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임원·직원
3. 그 밖에 기업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19조(협력관의 임무)① 협력관은 기업유치 발굴, 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협력관 회의를 소집하여 기업유치에 관한 활동 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20조(협력관의 수당과 성과보상)① 시장은 협력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회의참석 수당과 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적 성과에 따라 기업유치 성과금(이하“성과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과 필요한 경비는 규칙으로 정하고, 성과금의 지급대상과 투자금액에 대한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고, 시장은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21조(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의 위촉 해지)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등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2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포상)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다른 조례의 준용 등)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투자지원금 대상기업 지원기준(제14조 관련)

| 구 분         | 산 업 분 야                                     |                                                       | 지원금액                   | 비고 |
|-------------|---------------------------------------------|-------------------------------------------------------|------------------------|----|
| 대규모<br>투자기업 | 1. 기업본사<br>2.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br>교육서비스업 |                                                       | 지방소득세<br>납부액<br>100/20 |    |
| 첨단기술기업      | 1. 신산업 분야                                   | ·IT융합<br>·RFID/USN<br>·나노융합<br>·로봇<br>·바이오<br>·의료기기   | 지방소득세<br>납부액<br>100/15 |    |
|             | 2. 주력산업 분야                                  | ·금속소재<br>·생산기반<br>·생산시스템<br>·청정기반<br>·항공우주<br>·화학공정소재 | 지방소득세<br>납부액<br>100/15 |    |
|             | 3. 정보통신 분야                                  | ·LED/광<br>·디스플레이<br>·반도체<br>·소프트웨어<br>·차세대이동통신        | 지방소득세<br>납부액<br>100/15 |    |
|             | 4. 에너지 분야                                   | ·신재생에너지(열, 전기)<br>·에너지 효율 향상<br>·자원기술                 | 지방소득세<br>납부액<br>100/15 |    |
| 그 밖에 기업     |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 기업                              |                                                       | 지방소득세<br>납부액<br>100/10 |    |

[별표 2]

기업유치 성과금의 지급기준(제20조제2항 관련)

| 구 분                              | 유 치 금 액                  | 지급율       | 지 급 산 식                         |
|----------------------------------|--------------------------|-----------|---------------------------------|
| 공 장<br>본 사<br>연구소<br>대규모<br>유치기업 | 최저투자·유치금액 이상<br>100억원 까지 | 10/10,000 | 유치금액 x 0.001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까지        | 8/10,000  | 10,000천원+(유치금액-100억원) x 0.0008  |
|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까지      | 6/10,000  | 42,000천원+(유치금액-500억원) x 0.0006  |
|                                  | 1,000억원 초과               | 4/10,000  | 72,000천원+(유치금액-1,000억원)x 0.0004 |
| 생산자<br>서비스업                      | 최저투자·유치금액 이상<br>10억원 까지  | 10/1,000  | 유치금액 x 0.01                     |
|                                  | 10억원 초과 20억원 까지          | 8/1,000   | 10,000천원+(유치금액-10억원) x 0.008    |
|                                  | 20억원 초과 50억원 까지          | 6/1,000   | 18,000천원+(유치금액-20억원) x 0.006    |
|                                  | 50억원 초과                  | 4/1,000   | 36,000천원+(유치금액-50억원) x 0.004    |

## 1. 제출서류

- 가. 성과금 지급신청서
- 나. 법인등기부등본
-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별주민등록표
- 라. 유치실적 등 성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 기타 관련사항

## 2. 기타사항

- 가. 1인당 성과금 지급한도액은 연간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기타 성과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관련법령         | <div style="margin-bottom: 5px;"><input type="checkbox"/>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div> <div style="margin-left: 20px;">○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div> <div style="margin-bottom: 5px;"><input type="checkbo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div> <div style="margin-left: 20px;">○ 제2조(정의)</div> <div style="margin-bottom: 5px;"><input type="checkbo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div> <div style="margin-left: 20px;">○ 제2조(공장의 범위)</div> <div style="margin-bottom: 5px;"><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 시행령</div> <div style="margin-left: 20px;">○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div> <div style="margin-bottom: 5px;"><input type="checkbox"/> 산업발전법</div> <div style="margin-left: 20px;">○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div> <div style="margin-bottom: 5px;"><input type="checkbox"/> 문화산업진흥 기본법</div> <div style="margin-left: 20px;">○ 제2조(정의)</div> <div style="margin-bottom: 5px;"><input type="checkbox"/>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div> <div style="margin-left: 20px;">○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div> <div style="margin-bottom: 5px;"><input type="checkbox"/> 유통산업발전법</div> <div style="margin-left: 20px;">○ 제2조(정의)</div> <div style="margin-bottom: 5px;"><input type="checkbox"/> 해운법</div> <div style="margin-left: 20px;">○ 제2조(정의)</div> <div style="margin-bottom: 5px;"><input type="checkbox"/> 항공법</div> <div style="margin-left: 20px;">○ 제2조(정의)</div> <div style="margin-bottom: 5px;"><input type="checkbox"/>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div> <div style="margin-left: 20px;">○ 제2조(정의)</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세부내용 별지 작성”</div> |
| 관련조례<br>정비대상 |                                                                                                                                                                                                                                                                                                                                                                                                                                                                                                                                                                                                                                                                                                                                                                                                                                                                                                                                                                                                                                                                                                                                                                                                                                                                                                                                                                                                                                                                                                                                                      |
| 관련자료         |                                                                                                                                                                                                                                                                                                                                                                                                                                                                                                                                                                                                                                                                                                                                                                                                                                                                                                                                                                                                                                                                                                                                                                                                                                                                                                                                                                                                                                                                                                                                                      |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 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소: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4.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

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

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

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7.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9.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11. "제작"이란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15. "유통전문회사"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

감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16.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7.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18. "문화산업단지"란 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정보교류·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9.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 대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화물<br>운송업       | 육상화물운송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
|                 | 해상화물운송업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
|                 | 항공화물운송업                    |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
|                 | 파이프라인운송업                   | 파이프라인운송업                                                                                         |
| 물류<br>시설<br>운영업 | 창고업<br>(공동집배송센터<br>운영업 포함) |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
|                 | 물류터미널<br>운영업               |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

|            |                   |                                                                                                                                   |
|------------|-------------------|-----------------------------------------------------------------------------------------------------------------------------------|
| 물류<br>서비스업 | 화물취급업<br>(하역업 포함) |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br>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br>부가적인 물류업                                                                          |
|            | 화물주선업             | 국제물류주선업,<br>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            | 물류장비임대업           | 운송장비 임대업,<br>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br>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 임대업,<br>화물·선박 임대업, 화물항공기 임대업,<br>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br>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br>선박 대여업 |
|            | 물류정보처리업           |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br>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br>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
|            | 물류컨설팅업            |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br>컨설팅, 자동창고,<br>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br>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
|            | 해운부대사업            |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
|            | 항만운송관련업           |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br>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
|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br>검량사업                                                                                                       |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



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

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

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 □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桴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운중개업"이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 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한다.

9.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금융지원을 받아 낡은 선박을 대체하거나 새로이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 □ 항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31. "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2.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고용보조금 지원 최고금액 6억원(조례7조)
- 고용장려금 지원 최고금액 5억원(조례8조)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최고금액 3억원(조례9조)
- 임대료 지원 최고금액 2억원(조례10조)
- 시설보조금 지원 최고금액 15억원(조례11조)
-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방소득세납부액 100/20(조례14조)
- 신·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 최고금액 10억원(조례15조)
- 협력관의 성과급 최고금액 2억원(조례20조)
- 위원회 및 협력관의 수당(조례6조, 조례20조)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또는 콜센타 등 기업이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지원기준에 충족하고, 최고금액으로 계산

※ 기업에 따라 고용인원 및 투자금액이 서로 다르고, 입주방식도 모두 다르므로 지원 금액 산출에 있어서 최고금액 추계 함.

- 고용보조금 지원  $6\text{억원} \times 6\text{회} = 36\text{억원}$
- 고용장려금 지원  $5\text{억원} \times 6\text{회} = 30\text{억원}$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3\text{억원} \times 6\text{회} = 18\text{억원}$

- 임대료 지원                      2억원 × 6회 = 12억원
- 시설보조금 지원              15억원 × 6회 = 90억원
- 대규모 투자기업은 지방소득세납부액 100억원 기준  
                                            20억원 × 6회 = 120억원
- ※ 지방소득세납부액 100/20%기준으로 약 20억원 임
- 신·증설기업 지원            10억원 × 2회 = 20억원
- 협력관 성과보상              2억원 × 2회 = 4억원
- 회의 수당 등    30명 × 5회 × 70천원 ≒ 10,000천원

#### 나. 추계 결과

- 대규모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추계결과 연간 3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대규모 투자기업이 지방소득세 납부액 기준으로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전체금액 환산 할 경우 세입증대에 유리 함
- 대규모 기업이 더 많이 유치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지방세도 증가 할 것으로 보여 짐

#### 다. 재원조달방안

- 기업이 인천광역시에 투자하고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지원 하는 제도로 익년도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필요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4. 작성자 : 산업위원회 허인환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br>(2014년) | 2차년도<br>(2015년) | 3차년도<br>(2016년) | 4차년도<br>(2017년) | 5차년도<br>(2018년) | 계           |
|-------|------|-----------------|-----------------|-----------------|-----------------|-----------------|-------------|
| 세입    | 지방세  | 60,000,000      | 120,000,000     | 180,000,000     | 210,000,000     | 240,000,000     | 810,000,000 |
|       | 소계   | 60,000,000      | 120,000,000     | 180,000,000     | 210,000,000     | 240,000,000     | 810,000,000 |
| 세출    | 일반회계 | 10,000          | 33,010,000      | 45,010,000      | 45,010,000      | 28,910,000      | 151,950,000 |
|       | 소계   | 10,000          | 33,010,000      | 45,010,000      | 45,010,000      | 28,910,000      | 151,950,000 |
| 재원 조달 |      | 10,000          | 33,010,000      | 45,010,000      | 45,010,000      | 28,910,000      | 151,950,000 |
| 국 비   |      | 0               | 0               | 0               | 0               | 0               | 0           |
| 시비    | 소 계  | 10,000          | 33,010,000      | 45,010,000      | 45,010,000      | 28,910,000      | 151,950,000 |
|       | 일반회계 | 10,000          | 33,010,000      | 45,010,000      | 45,010,000      | 28,910,000      | 151,950,000 |
|       | 특별회계 | 0               | 0               | 0               | 0               | 0               | 0           |
|       | 기 금  | 0               | 0               | 0               | 0               | 0               | 0           |
| 군·구비  |      | 0               | 0               | 0               | 0               | 0               | 0           |
| 민 간   |      | 0               | 0               | 0               | 0               | 0               | 0           |
| 기 타   |      | 0               | 0               | 0               | 0               | 0               | 0           |

- ※ 1) 2014년 지방소득세 납부액 100억원 정도 기업유치를 6개 기업으로  
2017년부터 유치기업을 3개 기업으로 함
- 2)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 금액 2년간 20%(조례14조)